

의안번호	제 471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영주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6년 9월 26일

#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9월 26일

발의자 : 김영주, 이광희, 이양섭,  
박우양, 박종규, 윤은희  
황규철

## 1. 개정이유

- 충북의 자살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충청북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 개선을 통해 실질적 민·관 거버넌스의 강화를 도모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용어 변경 및 약칭표기 개정 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
- (현행) 주민 → (개정) 도민
- 제1조 목적조문에 사용된 약칭을 제2조로 옮김

나. 교육감의 책무 및 홍보·교육 활동 조항 삭제

- (현행) 제5조, 제10조제4항

다. 위원회 구성 확대 (안 제6조)

- 위원수 : (현행) 10명 이내 → (개정) 15명 이내
- 위원장 : (현행) 충청북도 3급 이상 공무원 → (개정) 행정부지사
-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확대 (추가)
  - 당연직 : 여성정책관
  - 위촉직 :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 추천 각 1명

**3. 일부개정조례안 : 불입**

#### **4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불입

나. 신구조문대비표 : 불입

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 - 45 호

라. 협의 :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협의

마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고 한다)” 를 “충청북도” 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도” 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“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 2항 중 “주민” 을 “도민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주민” 을 각각 “도민” 으로, 같은 항 제2항 중 “취 해야” 를 “취해야” 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주민” 을 “도민” 으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하고,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.

제5조(중전의 제6조)의 제목 “(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)” 을 “(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· 시행)” 으로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7조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·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7조)제2항 중 “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” 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” 으로, “충청북도 3급이상 공무원이” 를 “행정부지사가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7조)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,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
2. 자살예방 전문 조사·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
3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

제6조(중전의 제7조)제3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5.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
6.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

제6조(중전의 제7조)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(중전의 제7조)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8조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살예방센터” 를 “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센터“라 한다)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인정하는” 을

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**도지사 및 시장·군수**” 를 “**도지사**” 로, “**자살예방센터**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” 를 “**센터**를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전문성, 인력,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중전의 제8조)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를 따른다.

제8조(중전의 제9조)에 제1항 중 “**주민**” 을 “**도민**” 으로 한다.

제9조(중전의 제10조)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(중전의 제12조)제1항 중 “**범위안에서**” 를 “**범위에서**” 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3조) 중 “**알게된**” 을 “**알게 된**” 으로, “**아니된다**” 를 “**아니 된다**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<u>충청북도</u>(이하 “도“라고 한다)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충청북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본정책)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환경을 고려하여 성별, 연령별, 계층별,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<u>도</u>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.</p> <p>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,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<u>충청북도</u>민(이하 “주민“이라 한다)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기본정책) ① ----- ----- ----- <u>충청북도</u>(이하 “도“라 한다)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“<u>도민</u>“----- -----.</p>
<p>제3조(도민의 권리와 의무) ① <u>주민</u></p>	<p>제3조(도민의 권리와 의무) ① <u>도민</u>-</p>

<p>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와 시장·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</p> <p>② <u>주민</u>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,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,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<u>취</u>해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도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</u>해야 -----.</p>
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<u>주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활성화</u>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----- <u>도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교육감의 책무) <u>충청북도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다</u>하여야 한다.</p>	<p>&lt;삭제&gt;</p>
<p>제6조(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) ① · ② (생략)</p>	<p>제5조(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제7조(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)

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충청북도 3급이상 공무원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고, 위원 중 교육청 관련 공무원 1명을 당연직으로 둔다.

1. 자살예방 전문 조사·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
2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
3.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(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)

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한다.

② ----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----- 행정부지사가 -----.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행정부지사, 보건복지국장, 여성정책관은 당연직으로 한다.
2. 자살예방 전문 조사·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
3.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등
4.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5. 충청북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
6. 충북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하는 각 1명

④·⑤ (생략)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⑦ (생략)

<신설>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

②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

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----

-----  
--- 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센터“라 한다)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 
-----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
-----

② 도지사-----  
----- 센터를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-----  
-----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전문성, 인력,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

<p>&lt;신 설&gt;</p>	<p>서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④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를 따른다.</p>
<p>제9조(자살통계 분석 등) ① 도지사 <u>주민</u>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.</p>	<p>제8조(자살통계 분석 등) ① -----      --- <u>도민</u> -----      -----      -----.</p>
<p>제10조(홍보·교육 등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<u>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9조(홍보·교육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제11조 (생 략)</p>	<p>제10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</p>
<p>제12조(민간단체 지원)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<u>범위안에서</u>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 략)</p>	<p>제11조(민간단체 지원) ① -----      -----     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     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<p><u>제13조</u>(비밀누설 금지)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<u>알게된</u>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<u>아니된다</u>.</p>	<p><u>제12조</u>(비밀누설 금지) ----- ----- ----- 알게 된 ----- ----- 아니 된다.</p>
<p><u>제14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13조</u> (현행 제14조와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지방자살예방센터(이하 “자살예방센터“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 관련 상담
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4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5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
6.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5.29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### □ 정신보건법

제13조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) ①, ② (생략)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·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3조의2(정신보건센터의 설치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·군·구 단위로 정신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